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63

발의연월일: 2020. 8. 4.

발 의 자:도종환·전용기·이상헌

유정주・김승원・박 정

이병훈 • 기동민 • 이재정

이규민 · 안민석 · 조정식

홍정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를 채용 및 재계약함에 있어서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. 또한 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도자가 국가 자격을 보유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자에 대한 관리가필요함

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가 국가자격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도자의 채용 및 재계약 시에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비위 체육지도자가 체육 현장에서 완전히 퇴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(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중 "체육지도자"를 "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직장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신규채용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때, 제18조의8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통하여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이력을 확인한 후 신규채용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① ~	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	4
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	
"공공기관"이라 한다)과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	
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	
운영하고 <u>체육지도자</u> 를 두어야	<u>제</u> 2조제6호에 따른
한다.	<u>체육지도자</u> .
<u><신 설></u>	⑤ 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과
	직장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신
	규채용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
	결할 때, 제18조의8에 따른 징
	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
	체육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확
	인한 후 신규채용계약 또는 재
	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<u>⑤</u> 제2항부터 <u>제4항</u> 까지의 규	<u>⑥</u> <u>제5항</u>
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	
업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	
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지도·	
감독한다.	<u>.</u>